

# 방송통신위원회

## 심의·의결

안전번호 제2019 - 41 - 210호

# 안 건 명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9. 8. 23.

주 문

1. 피임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할 것

2.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금액 : 25,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유

### I.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원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8. 5. 28.~5. 29.)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원단 판매 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018. 5. 28. 기준으로 건의 회원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 정보 (유효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선택)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면회원	상동		



## 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경로

### (1) 개인정보 유출 규모

피싱인이 원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97,011건이 유출되었다.

< 피싱인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

구분	유출 항목	건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전호	97,011건

### (2) 유출 경로

미상의 해커가 2017. 9. 15. SqlMap 툴을 사용하여 SQL Injection 방법으로 피싱인의 쇼핑몰 사이트를 공격하여 피싱인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3)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싱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8. 3. 12. 발송한 개인정보 유출관련 메일을 2018. 3. 13.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신고하였으며, 2018. 3. 14. 개인정보 유출사실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당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토록 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한 사실이 없다.

**다.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당시 쇼핑몰에 이용자 로그인 시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암호화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피심인은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회원 56,941명을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기존 회원정보 테이블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한 사실이 없다.

**마.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9. 1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 III.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3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제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제2호)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인터넷 구간 등 외부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노트북, 업무용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으로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식별·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증서(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보안토큰(암호 연산장치 등으로 내부에 저장된 정보가 외부로 복사, 재생산 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이 해당),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아이디 등), 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제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6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하며,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이용한 보안서버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침인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침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 기록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이를 확인·감독하지 않고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로그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다.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침인이 이용자의 PC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



## 관리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피침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 피침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패스워드만을 이용토록 하여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고시§4④)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감독하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고시§5①)
	암호화	§28①4호	§15④3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고시§6③)
	유효 기간	§29②	§16②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 IV. 시정조치 명령

### 1. 시정명령

가. 피침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할 것

나.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쳐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러. 법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주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가 3개에 해당하므로 기준 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 〉

위반의 정도	가.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b>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별표 9 제2호 너목</b>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3·4호	1,000만원	500만원	없음	1,5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계				2,500만원

####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침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침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침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8월 23일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김 석 진



위 원      허      육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